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19호

2. 발 의 자 : 이승미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Ⅱ. 제안이유

- 기존의 교실과 종이교과서로 한정적이던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로 더 질 높은 수업과 교육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 버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윤리준칙 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교육감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구축 지원 (안 제16조)

- 2. 교육감이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윤리원칙 제정·보급,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안 제17조)
- 3.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8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이승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19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감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디 지털 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윤리준칙 제 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이 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교육현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촉진된 원격수업과 함께 정보화 기기 도입 및 에듀테크 기술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총 100만명의 정보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부터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교육 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 조에 따른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¹)과 교육부 계획에 부합한

¹⁾ 최근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2023~2025)」(관계부처 합동, 2022.11.)을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문화 등 5개 전략 목표에 19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인공지능·소 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사이버 교수학습, 클라우드 활성화, 서울형 교육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보안 강화, 빅데이타 교육 서비스 지원 및 개방 등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²⁾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능정보화 정책은 각급학교의 네트워크 노후화 및 열악한 관리 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와 같은 지원체계와 지능정보에 대한 윤리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기술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지능정보화 윤리원칙을 제정·보급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4항은 교육감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아닌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x27;제3차(2019~2023년) 정보화 기본계획', 서울시교육청, 2020.2.

^{1,}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정보보호 교육확대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2.} 미래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서울교육 견인

^{3.} D.N.A.(Data-Network-AI) 기반 특화교육 선도 서울교육 서비스 제공

- 현재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의한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이를 반영한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매년 수립하는 실 행계획이며,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매년 수립되는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동 조례 제6조제4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매년 작성되는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조례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검토(안 제10조제3항제3호)
- 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질 뿐, 위 원회 구성에 있어 상임위원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³⁾, 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³⁾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과 법제처의 의견제시(22-0104, 2022.4.27.)

- 3)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등의 활용 지원에 대한 검토(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지능 정보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또는 교구 및 교재의 보급, 전문인력 확보, 재 정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7조제1항4)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과 지원인력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더욱이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제1항⁵⁾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 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한 지원은 지능정보화 중 일부인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한계 성을 가지고 있는바,

^{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⁵⁾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16조는 원격수업을 포함한 사물인터넷, 메이커교육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인 지능정보기술 등을 포괄한 지원이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 제고에 대한 검토(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교육감에게 지능정보사회윤리에 대한 윤리원칙을 제 정·보급하도록 하고(안 제1항), 관련한 교재와 교육프로램을 개 발·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2조제1항⁶⁾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 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원칙을 담은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와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등을 개발·보급(2023년) 함으로써 국가수준 인공지능 윤리기준(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윤리를 교육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는 상위법과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실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원의 인공지능에 대한이해를 돕고, 교과와 연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내실을 도모할 수

⁶⁾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 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 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에게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활 성화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7)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무와 같은 제17조8)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안 제18조 는 법적 체계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 부, 민간단체 등의 효율적 협력과 관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검토(안 제12조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안 제14조)
-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소집통지, 의견청취, 심의·조정사항을 서면 대체, 회의결과보고, 위 원회 운영사항 결정권한, 위원회 참석자의 수당지급을 삭제하는 것

⁷⁾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⁸⁾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 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 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 진 국	입법조시관	이 성 윤
	(2180-8263)		(2180-8266)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공공 · 민간 · 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 3.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 4.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 5.정보의 공동활용 `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 6.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 7.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 홍보 ·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 8.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 9.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10.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 11.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